

표 준 근 로 계 약 서 (예시)

공정거래위원회(이하"공정위"라 함)와 근로자 ○○○(이하 "근로자"라 함)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상호 계약조건의 성실한 이행을 약정한다.

* 근로자의 인적사항

성 명	성 별	연 령	생년월일	현 주 소	
전화번호(핸드폰)		연 락 처	최초계약일	근무부서	근무형태

제1조(계약의 목적) 본 계약은 공정위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근로조건 및 공정위와 근로자 간의 권리·의무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상호 성실한 계약의 이행을 확약하고 근로계약과 관련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함에 목적이 있다.

제2조(관련법령) 근로자는 공정위 청사 또는 지방사무소 등 업무수행 장소에서 상시적으로 근무하면서 공무원의 사무 또는 공무원이 처리하기 적절하지 아니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,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정한 공무직근로자 등 운영규정(이하"운영규정"이라 한다.)을 따른다. 다만, 운영규정과 근로기준법이 상충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을 우선 적용한다.

제3조(계약기간) 본 계약의 계약기간은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로 한다. (공무직근로자의 근로계약인 경우"본 계약은 20 년 월 일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으로 한다.")

제4조(보수) ① 근로자의 보수는 연 원으로 정하며, 매월 25일에 연봉월액을 근로자가 지정한 계좌로 입금함으로써 지급한다. 단, 25일이 휴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.

②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제1항의 보수를 지급할 때 갑종근로소득세, 주민세 및 각종 근로자 부담분 등을 공제한 후 지급한다.

③ 사업주는 공정위 예산사정과 관련규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공무직근로자 등의 연봉을 변경할 수 있다.

제5조(근무장소 및 업무내용) ① 근로자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<첨부1>의 업무기술서에 기재된 바와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.

② 근무부서 및 업무의 내용은 기관의 사정 및 인력운용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, 변경될 경우에는 업무기술서를 다시 작성하여 변경계약을 체결한다.

제6조(근로조건) ① 근무시간은 「국가공무원 복무규정」 제9조부터 제1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.(근무시간을 달리 정할 경우, "근무시간은 평일(또는 요일 적시) 시 분부터 시 분까지로 한다.)

② 근로자의 근무상황 및 시간외 근무(또는 휴일근무)는 행정지원인력시스템 등을 통해 전자적으로 기록·관리하며, 근로자는 근무상황 및 시간외 근무에 대해 성실히 보고하고 기록하여야 한다.

③ 근로자가 근무하는 부서의 장은 업무상 필요한 경우 근로자에 대하여 출장을 명할 수 있다.

제7조(휴일 및 휴가) ① 공무원직근로자 등의 휴일에 관하여는 「근로기준법」 제55조 및 제63조, 「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」 및 「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」 제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.

② 기타 연차유급휴가, 특별휴가, 공가 및 병가 등에 관한 사항은 관리규정 제61조 내지 제67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.

제8조(근무성적평가) ① 사업주는 매년 1회 근로자의 근무성적에 대해 평가할 수 있으며, 근무성적평가 결과는 계약의 해지, 재계약, 보수 등의 결정에 반영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근무성적평가에서 최하 등급을 연속 2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
제9조(계약의 해지) ① 근로자에게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가 있음을 알게 된 때에는 계약이 즉시 해지된다.

②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근로계약기간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.

1.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게 된 때
2.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기관에 손해를 초래하거나 기관의 명예를 손상한 때
3.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법령 또는 적법한 직무상 명령에 위반할 때
4.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때
5. 업무량 변화, 예산 감축, 직제 개정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때

6. 별표 1에서 정한 채용자격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또는 당해 직무수행에 필수적인 자격증의 효력이 없어지거나 면허가 취소되어 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
 7. 근무성적평가에서 ‘최하’ 등급을 연속 2회 이상 받은 때
 8. 사용부서의 장이 휴직사유가 소멸한(휴직기간 내라도 당해 휴직자로부터 복직원을 제출받은) 공무원근로자 등에게 복직명령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불응한 때
 9. "해고"로 징계의결이 된 때
 10. 제34조제6항의 수습 중인 자가 업무능력 부족 또는 직무수행태도 불량 등으로 계속 근로가 어렵다고 인정된 때
 11. 그 밖의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한 때
-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근로계약 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 「근로기준법」 제23조 내지 제27조의 해고관련 규정을 준용한다.

제10조(기타사항) 기타 이 계약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근로기준법과 운영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20 년 월 일

공정거래위원회(재무관) : ○ ○ ○ (인)

근 로 자 : ○ ○ ○ (인)